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865호 2014년 5월 28일(수)

공 고

○ 분묘개장공고(1차)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분묘개장공고(1차)

속초시 교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 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 제11조 규정에 의거 일제 조사 된 묘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당해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일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·처리함을 공고합니다.

2014년 5월 28일

속 초 시 장

1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

위 치		장 소	기 수	비 고
소 재 지	지 번			
속초시 교동	산209-10, 산209-12, 산209-13, 산209-14, 산231-1, 산231-19, 775, 798-3, 798-4, 798-8, 798-10, 798-11, 798-40, 산231-2	속초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내	지번 내 모든 분묘	

2. 개장사유 : 속초시 생활체육공원 조성

3. 개장방법 :

○ 유연분묘 :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

○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신고 임의 개장

4. 개장 후 안치장소 : 속초시 추모의 집(강원도 속초시 이목로 196)

5. 공고기간 : 2014. 5. 28 ~ 2014. 8. 27(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)

6. 신고처 :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(033-639-2130)

7. 신고요령 : 신고자(연고자)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, 속초시청 문화체육과에 내방하여 연고자임을 신고(연고자와의 관계 증명 가능한 제적등본이나 족보, 사실확인서 등) 본인 신분증 지참

8. 기타사항 : 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같음함

9. 분묘개장 사업부지

